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 6. 20.)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래 만]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5.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5. 31.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
- (2)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정안정화 적립금 적립, 운용 : 100,000백만 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①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②=③+①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0	100,000,000	0	100,000,000	100,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①	융자금 미회수채권②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100,000,000	-	-	100,000,000

(2) 재원조성 : 일반회계의 출연금(전입금) 및 예금 이자수입

(3) 적립금의 사용

-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채무부담 사업비
-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19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목	'19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0,000,000	-	100,000,000	합 계	100,000,000	-	100,000,000
보 조 금	-	-	-	비용자성 사 업 비	-	-	-
전 입 금	100,000,000	-	100,000,000	용 자 성 사 업 력			
차 입 금				인 운 영 비			
용 자 금 회 수				기본경비			
예탁금원 금 회 수				예 탁 금			
예 치 회 회 수	-	-	-	예 치 금	100,000,000	-	100,000,000
예 수 금				차입금원 리금상환			
이자수입	-	-	-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 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0,000	-	100,000,000	
720 내부거래	100,000,000	-	100,000,000	
721 전입금	100,000,000	-	100,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00	-	100,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합계	100,000,000	-	100,000,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 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기획예산담당관	100,000,000	-	100,000,000
재정·금융			
재무활동(기획예산담당관)	100,000,000	-	100,000,000
보전지출(재정안정화적립금)	100,000,000	-	100,000,000
재정안정화적립금 예치	100,000,000	-	100,000,000
602 예치금	100,000,000	-	100,000,000
01 예치금	100,000,000	-	100,000,000
○ 예치금	100,000,000	-	100,000,000
지출합계	100,000,000	-	100,0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①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②	비용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2019년	100,000,000	100,000,000	0	0	0	0	0	100,000,000
계	100,000,000	100,000,000	0	0	0	0	0	100,000,00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①	'19년도말 현재액②	증감 (②-①)	
예치금	미정	-	-	100,000,000	100,000,000	

3. 검토사항

□ 재정안정화 기금 개념

- 경기변동에 따르는 유동적인 세입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증대 시 적립하고, 하락할 때 기금을 운용
-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우리군 재정여건

- 경상일반재원 세입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 방 세	196	213	241	267	269	
세외수입	141	161	155	190	189	
보통교부세	1,981	1,855	1,798	2,250	2,369	2,720(2019년)
조정교부금	115	175	188	271	212	240(2019년)

- 순세계잉여금 (단위 :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423	556	797	1,338	1,744	일반회계

-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단위 :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추정)
250	261	316	653	1,349	1,952*

* 1,952억 원 = (순세계잉여금 발생 1,744억 원 - 반영 729억 원) + 937억 원

□ 적립요건

구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적립요건	①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 이상 초과	②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③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④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적립비율	①초과분의 30% 이상	②초과분의 30% 이상	③초과분의 30% 이상	④초과분의 20% 이상

□ 적립금 분석

○ 최근 3년간 세입 여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비고
지방세	21,316	24,112	26,748	24,059	
순세계잉여금	55,609	79,729	133,769	89,70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비고
보통교부세	179,841	225,037	236,880	213,919	
조정교부금	18,798	27,123	21,089	22,337	

○ 적립 가능액 : 103,58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비고
3년 평균(A)	24,059	89,702	213,919	22,337	
적립요건(B)	29,655	107,642	235,310	24,570	
세입(C)	26,925 (2018년)	174,462 (2018년)	272,075 (2019년)	24,034 (2019년, 추정)	
적립 가능액 (C-B)	적립불가	66,820	36,765	적립불가	

□ 검토의견

- 경상일반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예비비로 편성, 순환 반복
- 여유 재원 1,00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고
-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타 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사례

(단위 : 억 원)

지자체명	조례제정일자	기금조성액	목 표 액
경상남도	'16.12.19.	100	1,000
진주시	'18. 3.16.	2,000	2,000
밀양시	'17. 3.23.	225	225
양산시	'17. 7.12.	40	100
의령군	'17. 4.12.	20	100
창녕군	'17. 4. 3.	20	100
고성군	'17. 1.26.	40	100
남해군	'17. 4. 7.	20	100
산청군	'17. 3.17.	20	100
함양군	'17. 3.15.	120	160
합천군	'17. 4. 1.	20	100
무안군	'18.12.28.	700	1,000
해남군	'19. 2.26.	1,000	1,500